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 현장위치

■ 주 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96-1

접수 · 서류제출 · 계약장소

■ 주 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LH 양산권 주거복지센터 4층(국민연금공단 건물 4층)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17년 6월 30일
- 신청접수 : 2017년 7월 10일(월) ~ 7월 14일(금)
- 신청방법 : 인터넷(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신청(24시간 신청가능)

※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해 현장 신청가능

경남지역본부
 1600-1004
 055)210-8302~6

LH 홈페이지 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행복주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

17/26/36/39㎡ 총 900세대



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대학생**에게
 높은 임대료가 부담인 **직장인, 신혼부부**에게
 양산물금2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내 집 마련의 주거 징검다리가 되어 드립니다.



“ 경남권 첫 행복주택
양산물금2에 옵니다! ”

Contents

- 03 행복주택 소개
- 04 행복주택 입주자격
- 06 이미지투시도
- 08 지구조감도 / 위치도
- 10 단지조감도 / 조경배치도
- 12 단위세대
- 22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표
- 24 마감재 시설내역
- 26 입주자모집 공고문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주택이 양산에 옵니다.

젊고 활력넘치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인 행복주택

무인택배보관함,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Happy House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활기찬 도시창조를 위해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징검다리가 되어 드립니다!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에게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행복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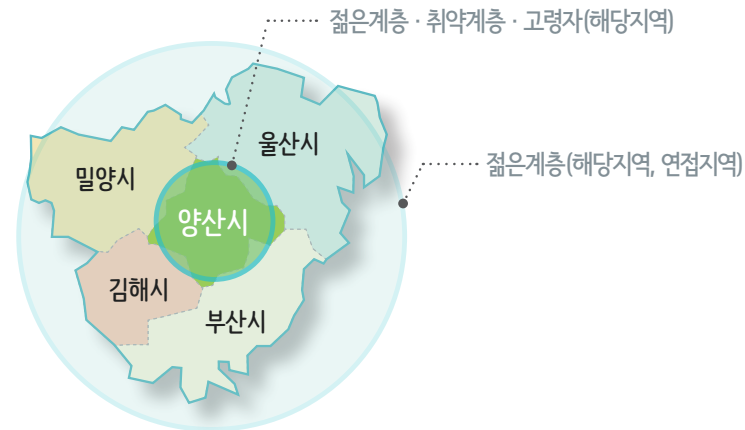
그 첫 만남을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에서 시작합니다.

[공급 대상별 신청 가능한 지역 요건]

젊은계층(80% 공급)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노인·취약계층(20% 공급)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연접지역** _ 밀양시 / 김해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01

청년층
주거복지
실현

02

문화예술
소통·화합
공간

03

지역경제
활성화

04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양산물금2 행복주택 입/주/자/격/안/내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 ① (대학생)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②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일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 ④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소득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활동을 말함
※ 예술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포함)

- ① (사회초년생) 1)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재취업준비생)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 ④ 혼인 중이 아닐 것
-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 ⑥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 ⑦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

- ① (신혼부부) 1)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대학생신혼부부)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1)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일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③ (예비신혼부부) 위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④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⑥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일 것
- ⑦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⑧ 혼인 중일 것
- ⑨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임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①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2,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 ①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학교와 직장을 **가깝게!** 주거비 부담을 **가볍게!**

생활도 교통도 가벼운 **젊음특권**, 양산물금2 행복주택

청정 자연환경 속 **가까운 학교**, **편리한 교통**,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에서 주거비 걱정없이 즐기분하게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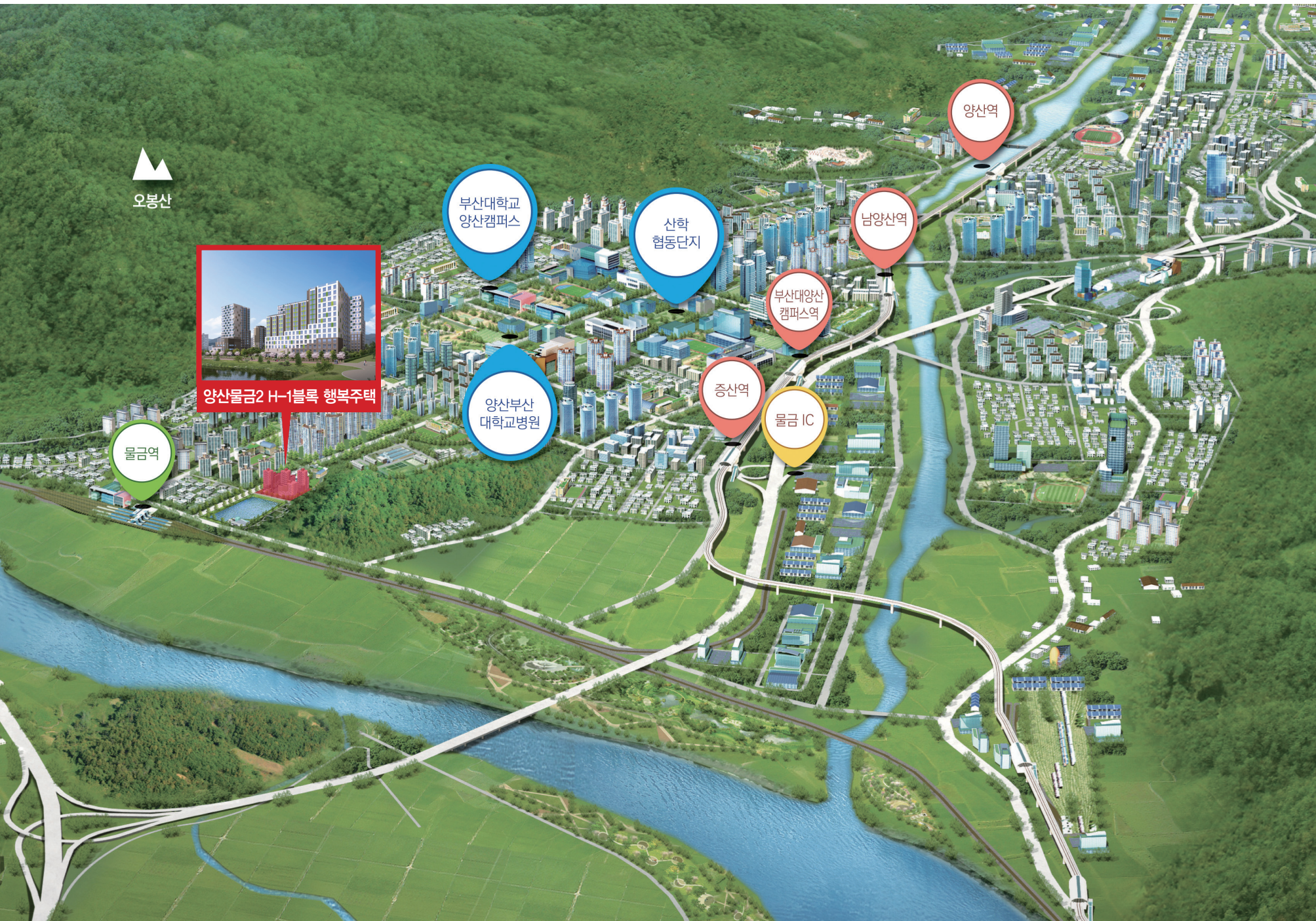


※ 상기 이미지투시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어디로든 빠르게, 무엇이든 편리하게, 누구든지 가깝하게 -

양산물금2 행복주택에서 부담은 가볍게, 생활은 편리하게 누리십시오!



Happy Housing Location

젊은 꿈을 펼치기 **딱 좋은 자리**-

모든 것이 가까운 **양산물금2**에서 **행복특권**을 누리세요!



2km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가 단지로부터 불과 약 2km(직선)로 단지과 학교를 도보 또는 자전거로 다닐 수 있어 대학생에게 특화된 입지



1.6km 부산지하철2호선 중산역

부산지하철2호선 중산역이 단지로부터 불과 약 1.6km(직선)로 사회초년생 등 출,퇴근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특화된 입지



500m 물금읍사무소 & 보건지소

물금읍사무소와 보건지소가 단지로부터 불과 약 500m(직선)로 읍사무소와 보건지소 이용이 잦은 고령자 등에게 특화된 입지



1.8km 물금IC

물금IC가 단지로부터 불과 약 1.8km(직선)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 특화된 입지



※ 상기 지역조감도 및 위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상의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감도, 조경배치도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 맞춤형 설계 -

일상이 **점음특권**이 되는 **행복**을 누립니다.



Happy Housing Architecture

※ 상기 단지조감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조경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총 900세대	저층형(101동, 104동)									
	17A	80세대	26A	68세대	36A	100세대	39A	41세대	39B	19세대
	고층형(102동, 103동, 105동)									
	17A1	324세대	26A1	98세대	39A1	138세대	39B1	32세대		

학교와 직장이 가깝고 힐링하기 딱 좋은곳!

양산물금2 행복주택이 준비한
다양하고 특별한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 무인택배보관함 | 작은도서관 | 주민편의시설 |
| 주민운동시설 | 어린이집 |



Unit Plan

17^A_{A1}

17㎡ 총 404세대

17A(80세대) 17A1(324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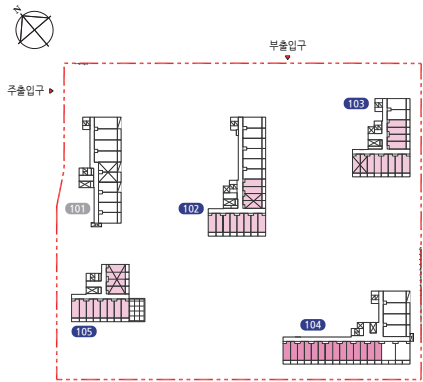
전용면적	17,230.0㎡
주거공용면적	10,452.2㎡
기타공용면적	1,568.7㎡
지하주차장	8,244.8㎡
계약면적	37,495.7㎡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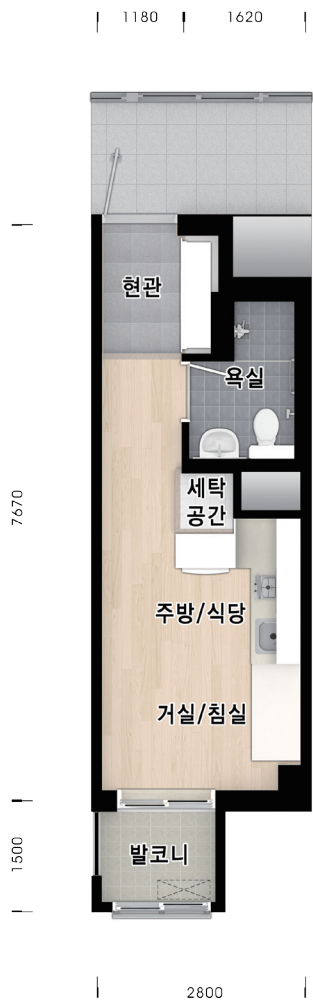
발코니계	2.49㎡
------	-------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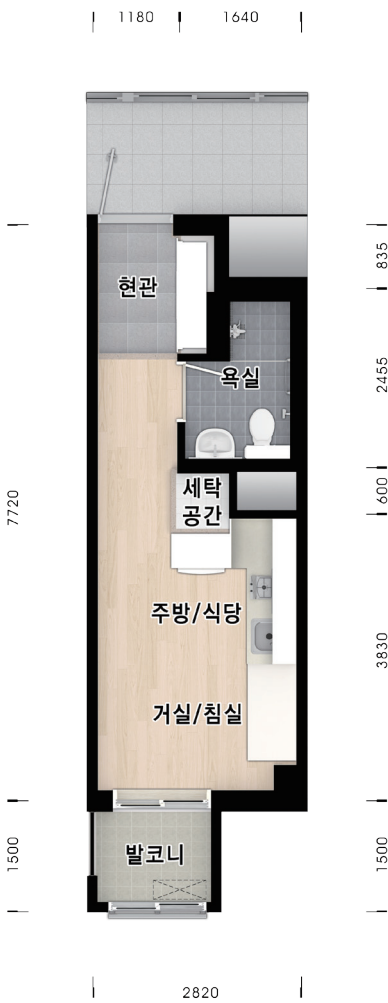
거실 / 침실	4.94㎡
주방 / 식당	7.24㎡
욕실	2.82㎡
현관	2.23㎡
소계	17.23㎡



[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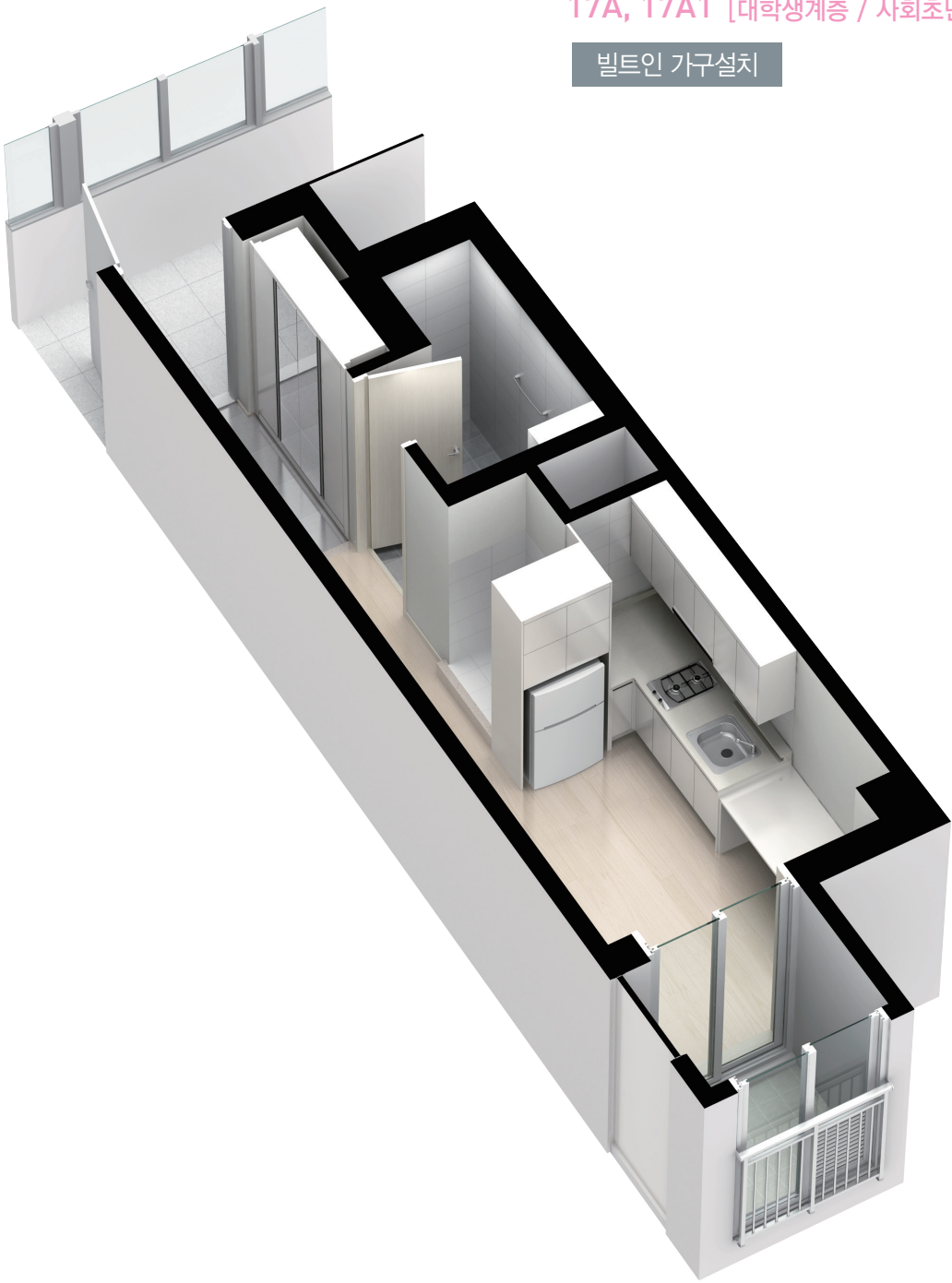


[17A1]



17A, 17A1 [대학생계층 / 사회초년생계층]

빌트인 가구설치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Unit Plan

26^A_{A1}

26㎡ 총 166세대
26A(68세대) 26A1(98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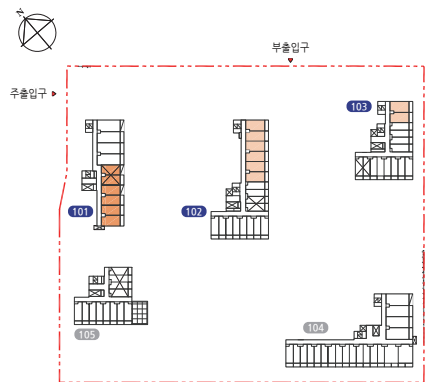
전용면적	26,1700㎡
주거공용면적	15,8754㎡
기타공용면적	2,3826㎡
지하주차장	12,5228㎡
계약면적	56,9508㎡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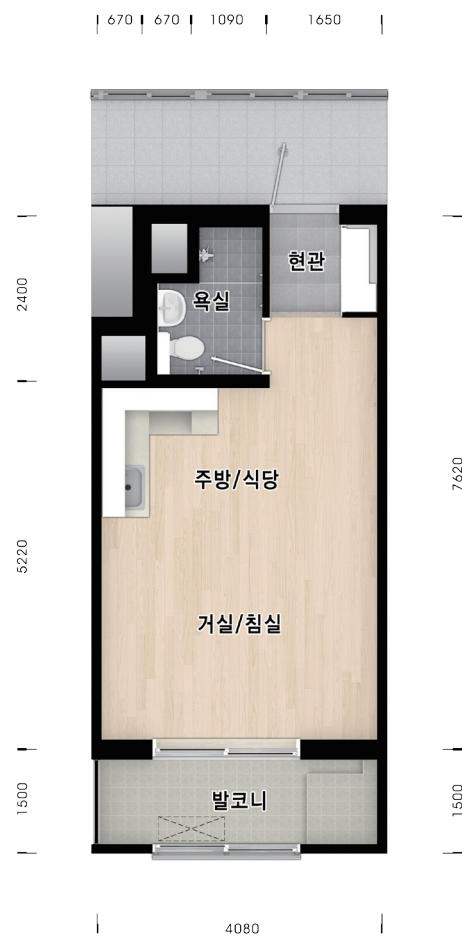
26A	6.12㎡
26A1	6.18㎡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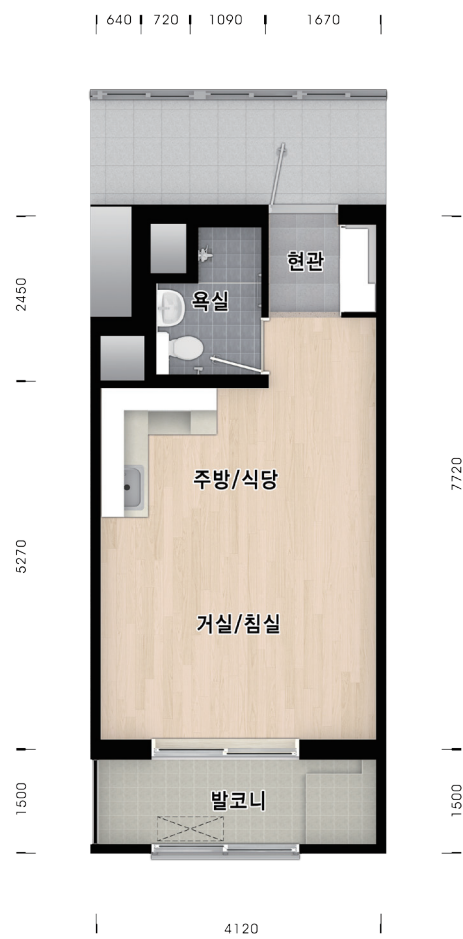
거실 / 침실	11.08㎡
주방 / 식당	9.96㎡
욕실	3.11㎡
현관	2.02㎡
소계	26.17㎡



[2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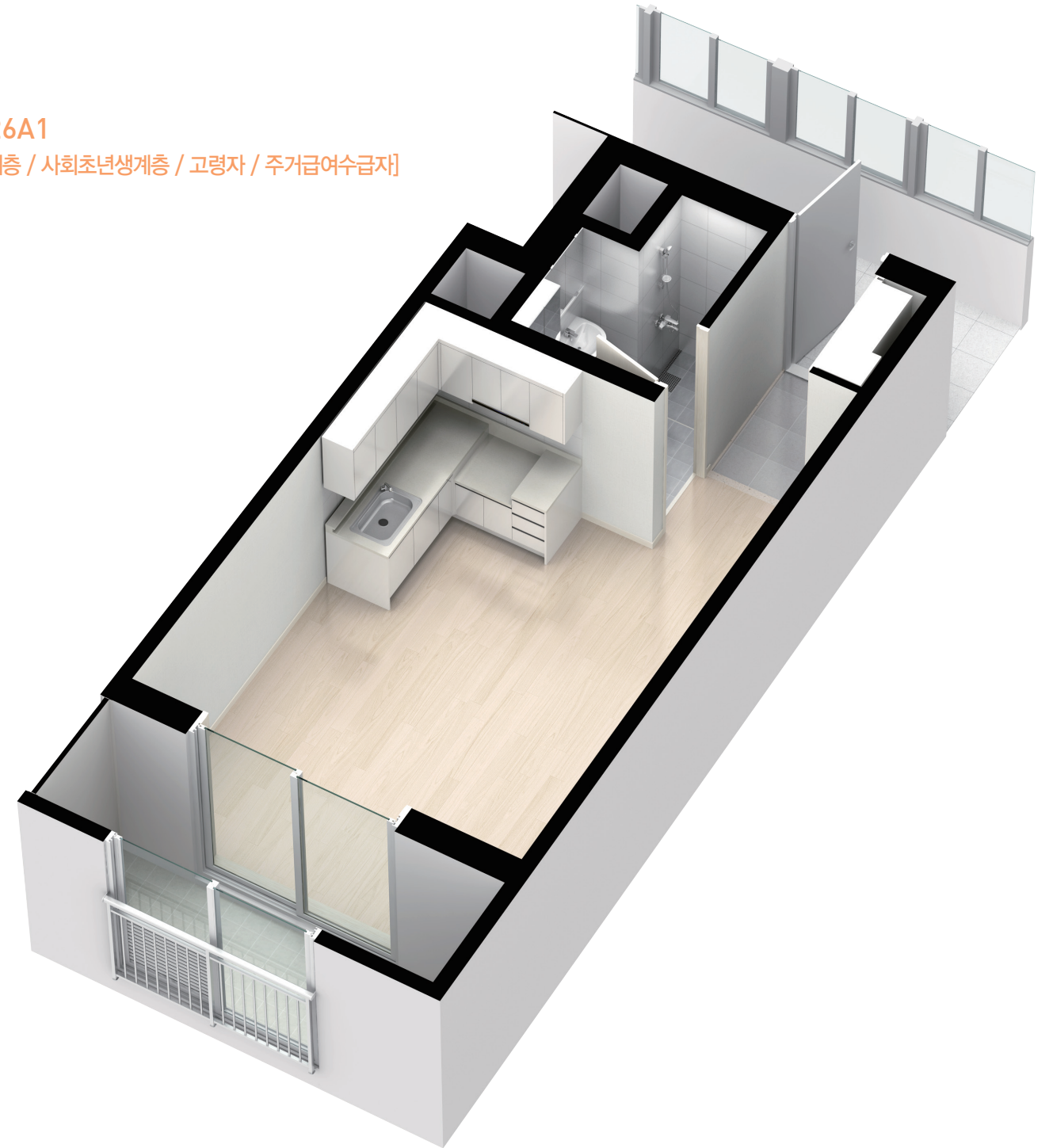


[26A1]



26A, 26A1

[대학생계층 / 사회초년생계층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Unit Plan

36A

36㎡ 총 100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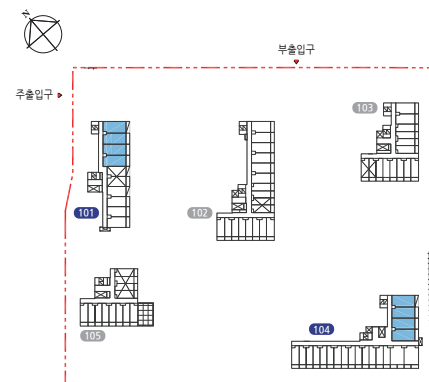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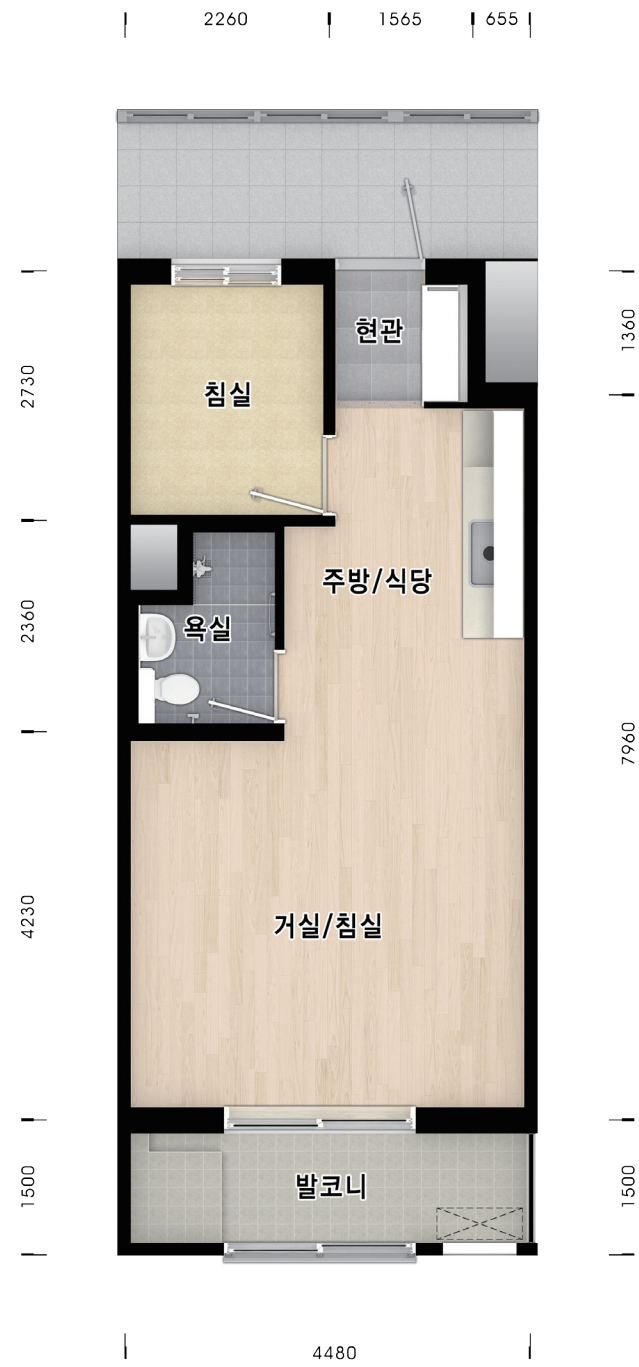
전 용 면 적	36,940㎡
주거공용면적	22,408㎡
기타공용면적	3,363㎡
지 하 주 차 장	17,676㎡
계 약 면 적	80,388㎡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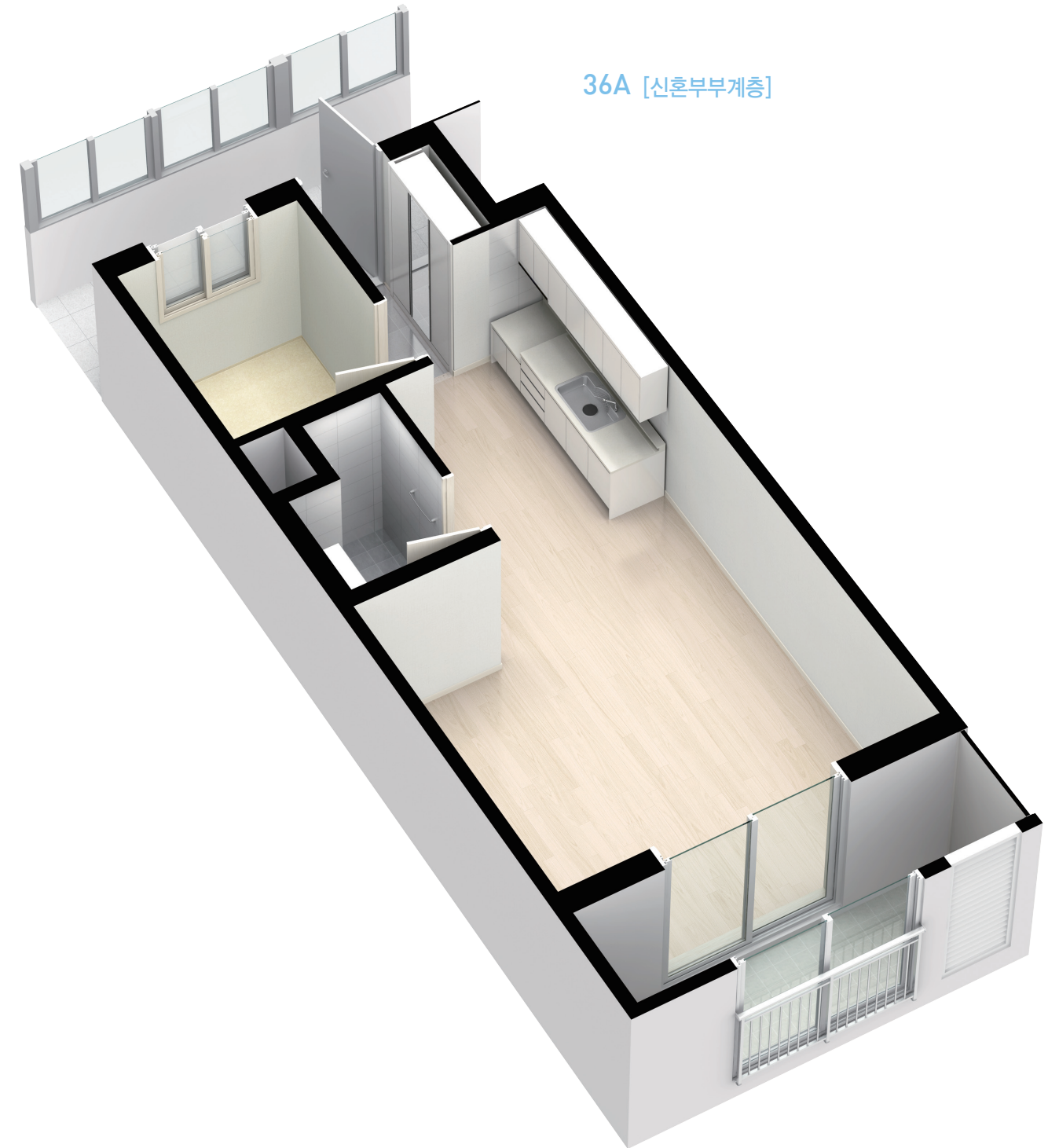
발 코 니 계	6.72㎡
---------	-------

실별면적

거 실 / 침 실	17.50㎡
침 실	5.42㎡
주 방 / 식 당	8.92㎡
욕 실	3.19㎡
현 관	1.91㎡
소 계	36.94㎡



36A [신혼부부계층]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Unit Plan

39^A_{A1}

39㎡ 총 179세대

39A(41세대) 39A1(138세대)

주택면적

전 용 면 적	39,680㎡
주거공용면적	24,071㎡
기타공용면적	3,612㎡
지 하 주 차 장	18,987㎡
계 약 면 적	86,351㎡

발코니면적

3 9 A	4.20㎡
3 9 A 1	4.23㎡

실별면적

거 실	8.19㎡
침 실	7.81㎡
부 부 서 재	7.13㎡
주 방 / 식 당	9.56㎡
다 용 도 실	1.77㎡
욕 실	2.82㎡
현 관	2.40㎡
소 계	3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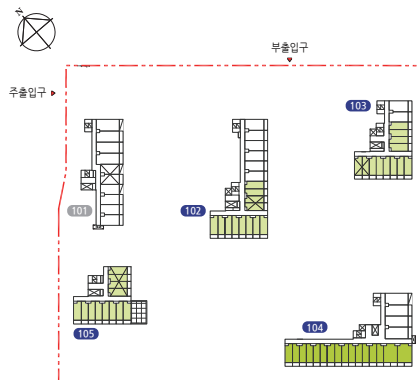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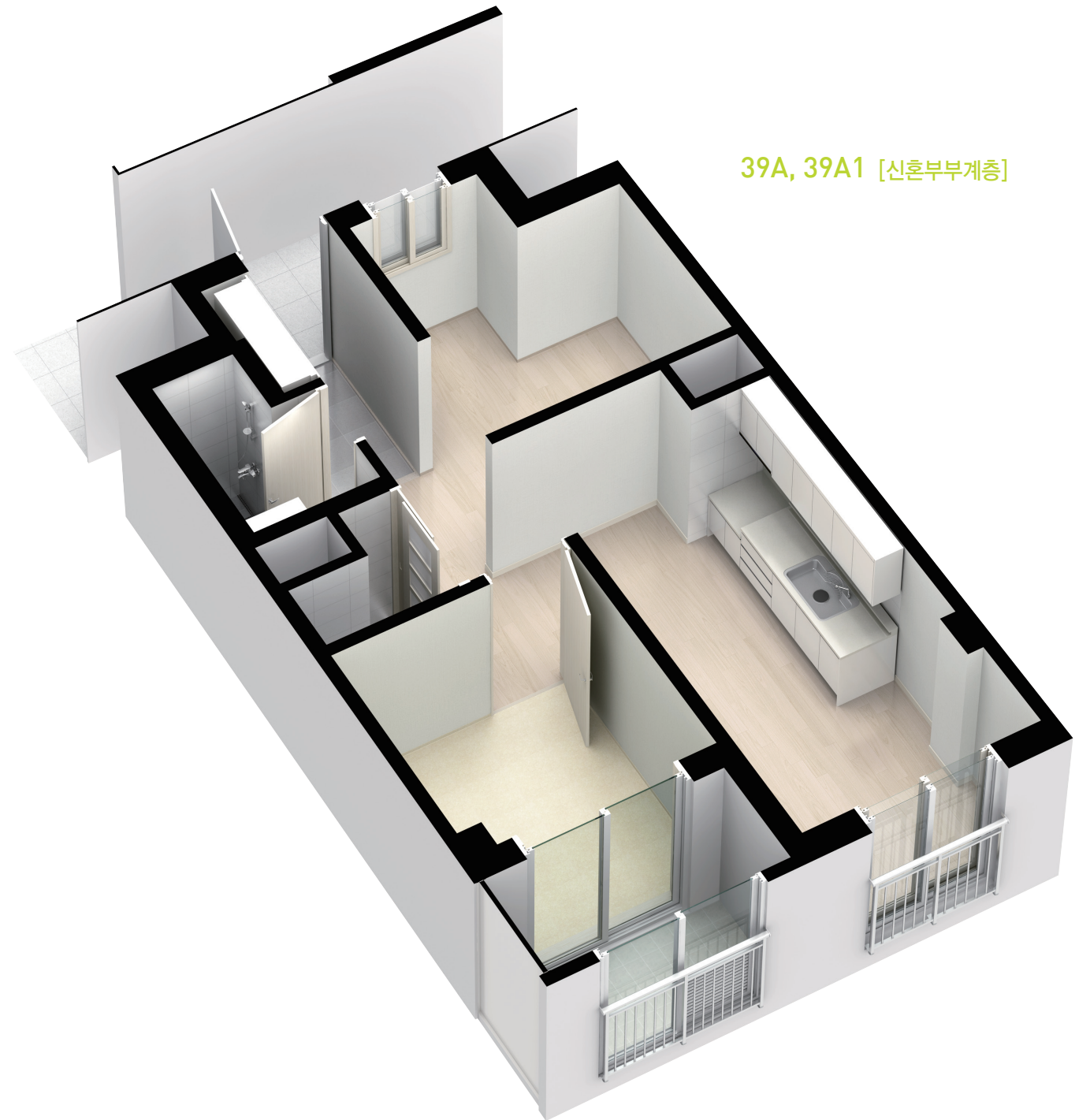
[39A]



[39A1]



39A, 39A1 [신혼부부계층]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Unit Plan

39^B_{B1}

39㎡ 총 51세대
39B(19세대) 39B1(32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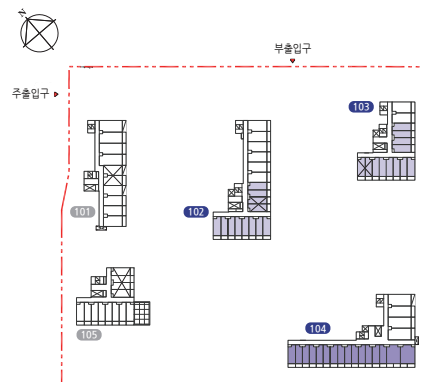
전 용 면 적	39,7900㎡
주거공용면적	24,1377㎡
기타공용면적	3,6226㎡
지 하 주 차 장	19,0402㎡
계 약 면 적	86,5905㎡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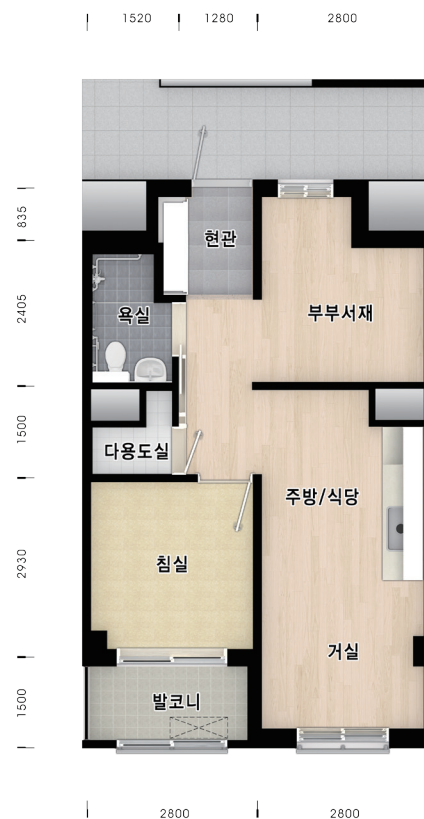
3 9 B	4.20㎡
3 9 B 1	4.23㎡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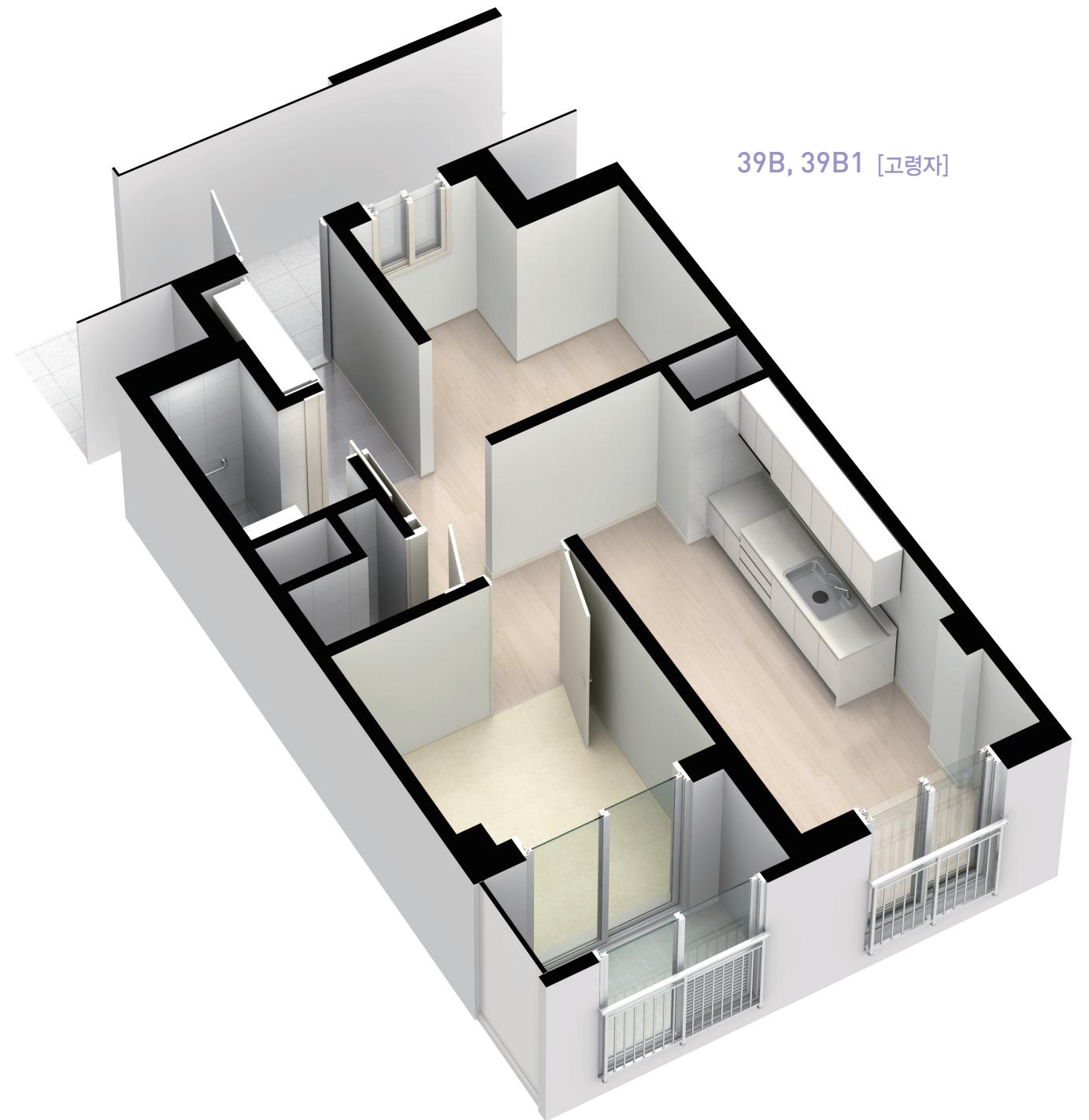
거 실	8.19㎡
침 실	7.81㎡
부 부 서 재	7.13㎡
주 방 / 식 당	9.79㎡
다 용 도 실	1.58㎡
욕 실	2.81㎡
현 관	2.48㎡
소 계	39.79㎡



[39B]



[39B1]



39B, 39B1 [고령자]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Plan map
단지배치도



※ 층별로 평형을 혼합 배치 하였으니 동호별 평형은 동호배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총 900세대

저층형(101동, 104동)					
17A	80세대	26A	68세대	36A	100세대
				39A	41세대
				39B	19세대
고층형(102동, 103동, 105동)					
17A1	324세대	26A1	98세대	39A1	138세대
				39B1	32세대

※ 상기 단지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기탑, 채광창,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이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 단지 외부와의 단차처리 계획은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Plan map
동호배치표

1210	1209	1208	1207	1206	1205				
1110	1109	1108	1107	1106	1105	1104	1103	1102	1101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210	209	208	207	필로티	필로티	204	203	202	201
110	109	108	107	필로티	필로티	104	103	102	101
101동 112세대									

26A	68세대	36A	44세대
-----	------	-----	------

1910	1909	1908	1907	1906	1905	1904	1903	1902	1901
1812	1811	1810	1809	1808	1807	1806	1805	1804	1803
1710	1709	1708	1707	1706	1705	1704	1703	1702	1701
1612	1611	1610	1609	1608	1607	1606	1605	1604	1603
1510	1509	1508	1507	1506	1505	1504	1503	1502	1501
1412	1411	1410	1409	1408	1407	1406	1405	1404	1403
1310	1309	1308	1307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1218	1217	1216	1215	1214	1213	1212	1211	1210	1209
1116	1115	1114	1113	1112	1111	1110	1109	1108	1107
1016	1015	1014	1013	1012	1011	1010	1009	1008	1007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816	815	814	813	812	811	810	809	808	807
712	711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612	61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512	51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312	31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211	210	209	208	필로티	필로티	207	206	205	204
111	110	109	108	필로티	필로티	107	106	105	104
102동 238세대									

17A1	108세대	26A1	72세대	39A1	42세대	39B1	16세대
------	-------	------	------	------	------	------	------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1912	1911	1910	1909	1908	1907	1906	1905	1904	1903
1810	1809	1808	1807	1806	1805	1804	1803	1802	1801
1712	1711	1710	1709	1708	1707	1706	1705	1704	1703
1610	1609	1608	1607	1606	1605	1604	1603	1602	1601
1512	1511	1510	1509	1508	1507	1506	1505	1504	1503
1410	1409	1408	1407	1406	1405	1404	1403	1402	1401
1314	1313	1312	1311	1310	1309	1308	1307	1306	1305
1212	1211	1210	1209	1208	1207	1206	1205	1204	1203
1112	1111	1110	1109	1108	1107	1106	1105	1104	1103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필로티	필로티	207	206	205	204	203	202	201	
필로티	필로티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3동 198세대									

17A1	108세대	26A1	26세대	39A1	48세대	39B1	16세대
------	-------	------	------	------	------	------	------

1810	1809	1808	1807	1806	1805	1804	1803	1802	1801
1712	1711	1710	1709	1708	1707	1706	1705	1704	1703
1610	1609	1608	1607	1606	1605	1604	1603	1602	1601
1512	1511	1510	1509	1508	1507	1506	1505	1504	1503
1410	1409	1408	1407	1406	1405	1404	1403	1402	1401
1312	1311	1310	1309	1308	1307	1306	1305	1304	1303
1210	1209	1208	1207	1206	1205	1204	1203	1202	1201
1112	1111	1110	1109	1108	1107	1106	1105	1104	1103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1002	100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06	605	604	603	602	601				
506	505	504	503	502	501				
406	405	404	403	402	401				
306	305	304	303	302	301				
206	205	204	203	202	201				
관리사무소, 주민편의시설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105동 156세대									

17A1	108세대	39A1	48세대
------	-------	------	------

											1408	1407	1406	1405	1404	1403	1402	1401
											1308	1307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1214	1213	1212	1211	1210	1209	1208	1207
											1114	1113	1112	1111	1110	1109	1108	1107
1020	1019	1018	1017	1016	1015	1014	1013	1012	1011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04	1003	1002
920	919	918	917	916	915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902
820	819	818	817	816	815	814	813	812	811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719	718	717	716	715	714	713	712	711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616	615	614	613	612	611	610	609	608	607	606	605	604	603	602	601			
513	512	511	510	509	508	507	506	505	504	503	502	501						
41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313	312	31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주민운동시설(경로당), 주민편의시설(사회적기업)										209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109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4동 196세대																		

17A	80세대	36A	56세대	39A	41세대	39B	19세대
-----	------	-----	------	-----	------	-----	------

Plan map
마감재 시설내역

품목		시설내역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일반 레버형	
	신발장	HPM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현관등	센서등	
거실	비디오폰	컬러LCD(7인치)	
	거실바닥재	러그카펫	
	거실등	아크릴카바	
	거실벽지	벽체:실크, 천장:발포	
주방	싱크대	설치	
	개수대	설치	
	레인지후드	슬림형	
	주방싱크수전	대불이형, 3단절수형	
	주방바닥재	러그카펫	
	주방타일	도기질타일	
침실	침실바닥재	러그카펫	
	침실벽지	벽체:실크, 천장:발포	
	침실문짝	ABS도어	
	창호	합성수지창호	
욕실	세면기	스탠드형	
	양변기	투피스형	
	샤워수전	안마헤드	
	세면기수전	레버형	
	욕신타일	바닥 : 자기질타일 벽체 : 도기질타일	
다용도실	세탁기수전	가로꼭지	39A,B형 해당
	다용도신타일	바닥 : 자기질타일 벽체 : 도기질타일	
세탁공간	세탁기수전	가로꼭지	17형 해당
	세탁실벽지	벽체:실크(1.5M이상) 천장:발포	
	세탁신타일	바닥 : 자기질타일 벽체 : 도기질타일 (1.5M이하)	
발코니	발코니새시	합성수지창호	26,36형 해당
	세탁기수전	가로꼭지	
	화초물주기수전	설치	
기타/정보통신	위성TV수신시스템	설치	
	CCTV시스템	설치	

※ 상기 마감재내역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appy Bridge For You



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7.06.30)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원(행복주택 900호)

• 양산물금2 H-1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해당지역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② 사회초년생 계층
 - 사회초년생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 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④ 고령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자
- ⑤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4층)를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17	대학생 계층	101	202	17.23	10.4522	1.5687	8.2448	37.4957	12,580	1,258	11,322	68	(+)1,000	13,580	63,000	4~6	벽식 · 지역 난방	'18.06					
	사회초년생 계층	101							(-)10,000	2,580	101,330	(+)2,000	15,320	62,000									
26	대학생 계층	9	19	26.17	15.8754	2.3826	12.5228	56.9508	13,320	1,332	11,988	72	(-)10,000	3,320	105,330	6							
	사회초년생 계층	9							(+)8,000	26,530	60,000	(-)14,000	4,530	146,660	4~6								
	주거급여 수급자	45							45	19,620	1,962	17,658	106	(+)9,000	28,620	61,000			6				
										(-)15,000	4,620	156,000	(+)5,000	21,350	63,000	20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20							19	16,350	1,635	14,715	88	(-)13,000	3,350				131,330	20			
										20,710	2,071	18,639	112	(+)10,000	30,710	62,000			20				
	36	신혼부부 계층							50	50	36.94	22.4088	3.3631	17.6764	80.3883	30,000	3,000	27,000		162	(-)16,000	4,710	165,330
																			(+)19,000		49,000	67,000	(-)24,000
39	신혼부부 계층	90	89	39.68	24.0710	3.6126	18.9875	86.3511	32,000	3,200	28,800	173	(+)20,000	52,000	73,000	6~10							
													(-)25,000	7,000	256,330								
	고령자 (주거약자용)	25	26	39.79	24.1377	3.6226	19.0402	86.5905	30,400	3,040	27,360	164	(+)19,000	49,400	69,000	20							
													(-)24,000	6,400	244,00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7형 및 26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주청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먼저 동일평형의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먼저 동일평형의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 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 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7형의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쿠팡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사회초년생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 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㉔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㉔ (대학생)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일 것
-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기준 |
|--------|---------------|
| 3인 이하 | 4,884,448원 이하 |
| 4인, 5인 | 5,630,275원 이하 |
| 6인 | 5,952,668원 이하 |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공적연금을 말함) 가입증명서상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 취업준비생은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분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가능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양산시 외 지역에 거주	부 또는 모가 양산시 외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양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양산시에 3년 이상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양산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 항목은 우선공급 신청자에게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17형 및 26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 추천함

-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사회초년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㉓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사회초년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①-㉔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일 것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사회초년생 본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3인 이하	4,884,448원 이하	3,907,558원 이하
	4, 5인	5,630,275원 이하	4,504,220원 이하
	6인	5,952,668원 이하	4,762,134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소득만 기준	3,907,558원 이하	

-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사회초년생 본인은 284,85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①-㉔**재취업준비생의 퇴직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함
-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및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 ※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재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17형 및 26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 추천함

-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㉓ (**신혼부부**) 1)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①-㉔ (**대학생신혼부부**)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1)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 또는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일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①-㉔ (**예비신혼부부**) 위 ①-㉓ 또는 ①-㉔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884,448원 이하
4인, 5인	5,630,275원 이하
6인	5,952,66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①~④ 취업준비생신혼부부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⑥,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됨.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예비)신혼부부 : 소득활동 지역이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 외 연접지역(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인 자
	(예비)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 학교 소재지(또는 거주지*)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배점 항목 ①의 ‘**학교 소재지**’는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대학교**이며, 신청자가 “**취업준비생**”인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 또는 본인의 거주지**를 말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함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양산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려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table> <tr> <th>가구원 수</th><th>월평균 소득기준</th></tr> <tr> <td>3인 이하</td><td>4,884,448원 이하</td></tr> <tr> <td>4인, 5인</td><td>5,630,275원 이하</td></tr> <tr> <td>6인</td><td>5,952,668원 이하</td></tr> </table>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884,448원 이하	4인, 5인	5,630,275원 이하	6인	5,952,668원 이하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884,448원 이하								
4인, 5인	5,630,275원 이하								
6인	5,952,66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5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회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④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양산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5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양산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자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양산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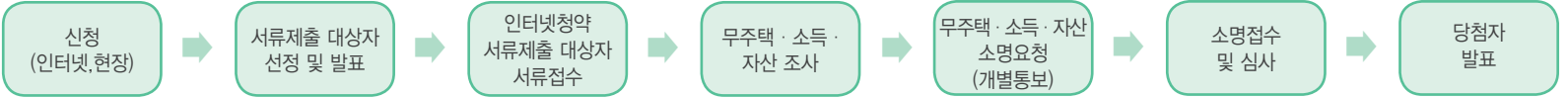
■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우선 공급	대학생계층	－ 인터넷(PC·모바일) 접수: '17.07.10(월) 10:00 ~ '17.07.14(금) 17: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17.07.25(화) 16:00 이후	'17.07.31(월) ~08.02(수) (10:00~17:00) ※ 현장접수 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4층(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17.10.13(금) 16:00 이후	－ 온라인계약 '17.10.23(월)10:00~ '17.10.24(화)17:00 － 현장계약 '17.10.25(수)10:00~ '17.10.26(목)17:00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계층					
	고령자					
일반 공급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계층	－ 현장접수: '17.07.10(월)~'17.07.14(금) (10:00~17:00) ※ 현장접수 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4층(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확인)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등기우편 접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장소)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현장계약 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4층(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LH 양산권 주거복지센터 4층)를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4층”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해당 세대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17.07.25(화) 16: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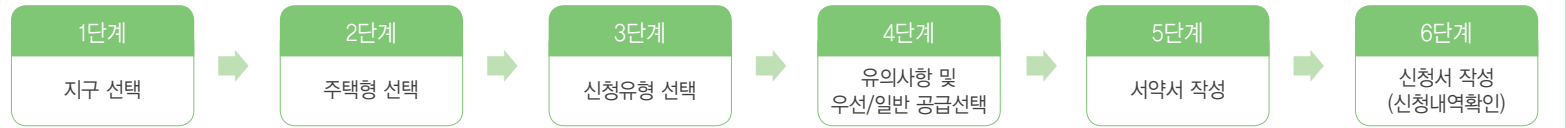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17.07.31(월)~'17.08.02(수) 10:00~17:00]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이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서류제출 장소**
 - － **현장접수 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4층(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17.07.10(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17.07.14(금)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존)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17.07.10(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17.07.14(금)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 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존)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7.06.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정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주민센터
사회초년생 계층	사회초년생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 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고등기술학교인 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시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 학교
	재취업 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시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 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시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민센터
	대학생 신혼부부	※ 대학생의 경우는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시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 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시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예비 신혼부부	〈대표신청자 신분별 제출서류〉 <table><tr><th>대표신청자 신분</th><th>제출서류</th></tr><tr><td>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 중인 자</td><td> •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td></tr><tr><td>대학생</td><td>재학 중인 대학의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 제출 </td></tr><tr><td>취업준비생</td><td>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td></tr></table>	대표신청자 신분	제출서류	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 중인 자	•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대학생	재학 중인 대학의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 학교
		대표신청자 신분	제출서류								
		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 중인 자	•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 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대학생	재학 중인 대학의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공통제출서류〉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사본 제출 • 당사자 2인 모두 현장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당사자 1인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위임장, 미방문자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미방문자 인감도장 지참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자 각각(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동봉	주민센터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주거약자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이후 등록자) －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 · 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호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12.7.10이후 등록자) － 5 · 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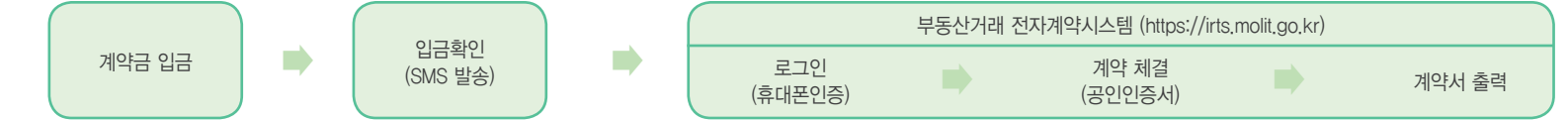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 · 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함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기간 : '17.10.23(월) 10:00 ~ '17.10.24(화)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계약체결 절차 】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함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17.10.25(수)10:00 ~ '17.10.26(목) 17: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산정방법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저축,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임대보증금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합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tr><td>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td><td>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td></tr><tr><td>신혼부부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 이상(10년)</td></tr><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table>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종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기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 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 초과 30% 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 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단지특성 - 최고층수는 지상 10~20층 규모입니다.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여 임대합니다. - 지붕은 경사지붕과 평지붕이 혼용되어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도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1층 및 저층세대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104동을 제외한 동은 1층에 위치하며 104동은 지하층에 위치합니다. -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계량기 등이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P.창호, 목재창호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세대(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대상)의 경우 빌트인 가구(책상 및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구)이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변세대에 한해 근린점포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인근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 남(동)측으로 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104동 3,4호 라인 앞으로 공원에 공동화장실이 위치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상위계획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 취향 등의 반영을 위한 변경요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및 산책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후면에 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욕의 쓰레기보관소가 아파트 전·후·측면부에 설치되어 있어,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세대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동별 1대 이상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마감재 및 발코니 여건	•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약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체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통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팜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책자(팜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공급안내책자(팜플릿)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차수는 팜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위하여 인목차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17형 세대는 세탁실이 주방/식당 내 위치하여, 세탁실 등이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용도 외 수전 사용 시 용수가 실내로 유입 가능하여 예약기능 사용 시 반드시 배수상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17형은 층별 위치에 따라 거실/침실 내 기동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 내 설치해야 하며, 36형만 발코니 에어컨 실외기 그릴창이 별도 설치됩니다. (나머지 주택형은 발코니창 하부에 그릴창이 혼합 설치됨) • 39형 신혼부부 계층에 부부서재(17형 하부에 위치한) 및 39형 거실 일부 천장고가 2,100mm로 가구 설치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천장고 2,300mm) • 39형 고령자(주거약자용)의 다용도실은 밖여닫이문이 적용되어 침실문과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9형 다용도실 등 스위치는 다용도실 내 위치하며, 39형 고령자(주거약자용)의 욕실 스위치는 부부서재 내 위치합니다. • 39형 거실, 침실은 기둥으로 인해 가구 및 TV 설치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9형 부부서재는 별도 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39형 욕실은 구조형식 차이에 따라 마감재에 차이가 있습니다. (39형 고령자(주거약자용)만 욕실이 습식구조, 나머지 주택형은 UBR(조립식)구조임)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통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17형은 세대위치에 따라 발코니 내 우오수 선통통이 있을 (없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간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7형, 39형은 세탁공간이 별도 설치되어 발코니 내 세탁공간은 없으며, 온수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냉수 수전만 설치됨) • 방법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품,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환기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가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간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남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자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 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산물금2 H-1BL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신동아건설(주) 강산건설(주) (주)노건설	-	-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 항목	제공 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욕실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천장센서등	지체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자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팜플릿 배부처	LH 경남지역본부,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LH 양산사업단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4층(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017. 06. 30